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배 포	2021. 6. 14.(월)
		담 당 과	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
		과 장	김일수 (☎043-719-2808)
		사 무 관	임상우 (☎043-719-2801)

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 추진

6월 14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.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행정처분 기준 명확화·세분화 ▲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▲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입니다.

1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·세분화

○ 의료기관 종사 의사·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·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'허가취소'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*하여 '업무정지'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.

*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·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

○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▲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▲일부 항목 미보고·기한초과 보고 ▲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합니다.

OPEN 공공누리

2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

○ 현재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 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여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합니다.

3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

○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「마약류관리법」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합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OPEN 공공누리